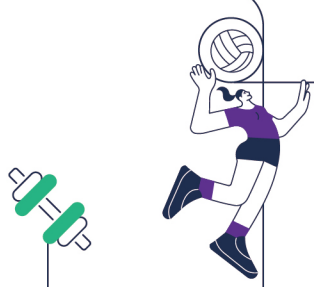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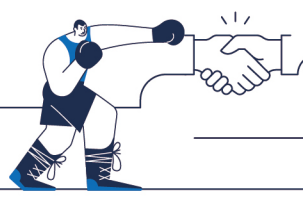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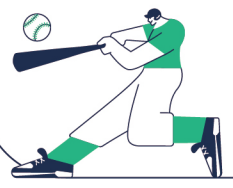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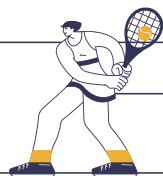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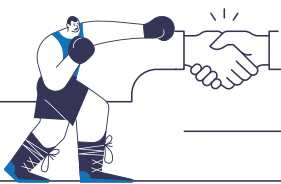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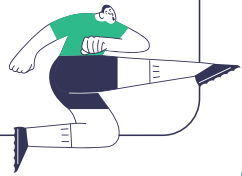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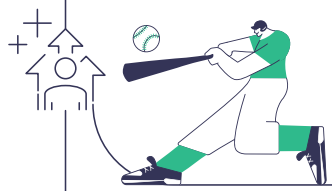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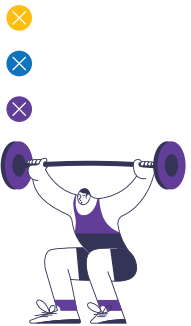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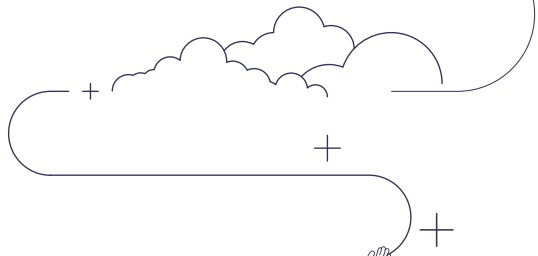
#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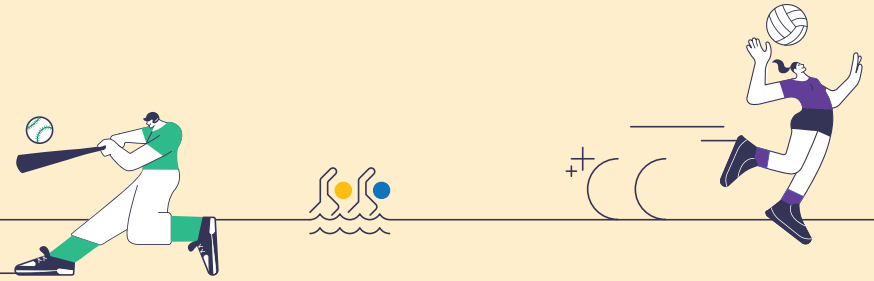


#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안내



#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안내





##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

체육인 복지 지원사업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체육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## 체육인 복지법 시행의 의의

법적 근거 새롭게 마련

지원대상 정의 및 대상 확대

신규사업 시행 기틀 마련



체육인 복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

지원대상을 법으로 정의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했습니다.



신규사업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.

\* 추후 확대 가능 사업

진로·창업 지원 / 협동조합 설립 지원 / 체육인 공제사업

1

국가대표선수·지도자  
복지후생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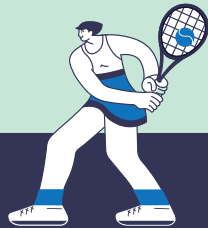
09

|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|----|
| 경기력 성과포상금       | 10 |
| ●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 | 10 |
| ●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| 13 |
| 생활지원금           | 14 |
| 교육지원금           | 15 |
| ●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 | 15 |
| ●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  | 16 |

2

보험지원금

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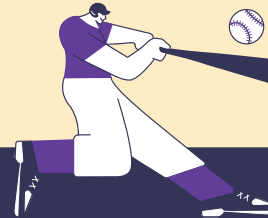


3

학생·원로  
체육인 지원

23

|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|----|
| 장학사업        | 24 |
| ● 체육인재 장학지원 | 24 |
| ● 체육장학금     | 26 |
| 원로 체육인 지원   | 27 |



4

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

29



#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 변화

## 기존 체육인복지 대상자 범위



## 변화된 체육인복지 대상자 범위



## 체육인의 정의(인정 범위)

### 선수

아래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으며,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,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

### 지도자

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으며,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된 사람

### 심판

아래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, 경기단체에서 심판으로 5년 이상 등록된 사람

### 국제대회

올림픽, 패럴림픽, 데플림픽,  
세계선수권대회, 세계대학경기대회,  
아시아경기대회, 세계군인체육대회

### 전국대회

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 
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



##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복지후생금



**경기력 성과포상금**  
-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 
-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



**생활지원금**



**교육지원금**  
-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
-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
# 경기력 성과 포상금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



## 지급대상

대회 입상을 통하여 획득한 포상금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

## 포상금 평가점수

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표10]

(단위 : 점)

| 구분   | 금메달     | 은메달 | 동메달 | 4위 | 5위 | 6위 |
|--|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|----|
| 올림픽대회 / 장애인올림픽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      | 70  | 40  | 8  | 4  | 2  |
| 농아인올림픽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      | 70  | 40  | -  | -  | -  |
| 세계선수권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년 주기   | 45  | 12  | 7  | -  | -  |
|  | 2~3년 주기 | 30  | 7   | 5  | -  | -  |
|  | 1년 주기   | 20  | 5   | 2  | -  | -  |
| 장애세계선수권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년 주기   | 30  | 8   | 5  | -  | -  |
|  | 2~3년 주기 | 15  | 4   | 3  | -  | -  |
|  | 1년 주기   | 7   | 2   | 1  | -  | -  |
| 세계대학경기대회 / 아시아경기대회 /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/ 세계군인체육대회 | 10      | 2   | 1   | -  | -  | -  |

## 지급시기

연중지급



월정금

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매월 20일 지급

\* 지급기간 :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



일시금 및 장려금

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달의 20일에 일시 지급

## 포상금종류 및 지급기준

|       | 평가점수   | 산출방식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월정금   | 10~30 점  | 10점당 15만원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1~100점  | 10점당 7.5만원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01점~110점  | 10점당 2.5만원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(최대)110점   | 100만원      | 올림픽 금메달은 평가점수가 90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지급 |
| 일시장려금 | 110점 초과  | 10점당 150만원 | 초과점수가 올림픽 금메달인 경우 10점당 500만원        |
| 일시금   | 1~30점  | 1점당 112만원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0점 초과   | 1점당 56만원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장려금 | 아시아경기대회, 세계대학생경기대회 등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한 선수 중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|            | 일시금 450만원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평가점수 20점 이상 시,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가능

지급절차



대상자 신청 및 서류제출

신청자 → 경기단체 취합 → 공단



신청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

공단



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지급

공단 → 대상자

1

**월정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되나요?**

월정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 (국제대회 종료 다음 달 등)부터 사망한 달 까지 지급됩니다.

2

**월정금을 수령하고 있는데,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?**

처음 월정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고 나면 향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최초 선택 시에 신중히 선택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Q&A

3

**성과포상금이 지급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?**

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,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(특정 법의 경우 벌금형)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,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경우 지급이 일시 보류됩니다.

4

**이전의 '경기력향상연구연금'과 같은 사업인가요?**

그렇습니다. 이전과 같은 지급방식을 유지하되, 성과에 따른 보상임을 감안하여 '연금'의 용어 대신 '포상금'의 명칭으로 정비되었습니다.

경기력 성과포상금  
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



지급대상

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를 직접 지도한 감독·코치 등 지도자

지급기준

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, 대회별 10점 이상 메달을 합산하여 지급

| 평가점수     | 산출방식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10 ~ 90점 | 10점당 334만원 |
| 90점 초과   | 10점당 167만원 |

지급시기

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달의 20일에 일시 지급

지급절차



대상자 신청 및 서류제출

신청자 → 경기단체 취합 → 공단



신청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

공단



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

공단 → 대상자



# 생활지원금



## 지급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 
\* 상세자격요건은 모집공고 참조

## 모집시기

연초공고 -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spo.or.kr>)의 공지사항 참조

## 지원내용

1인당 월 50만원(사업기간내)

## 선정 및 지급절차



대상자 신청 및 서류제출

신청자 → 경기단체



경기단체장 추천

경기단체 →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



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

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→ 공단



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 확정

공단



생활지원금 지급

공단 → 대상자

# 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
## 지급대상

국내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

## 모집시기

상·하반기 공고 -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(<http://www.kspo.or.kr>)의 공지사항 참조

## 지원내용

학기당 300만원의 범위내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,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지원 (1인당 1회만 지원)

## 지급중지 및 취소

요구서류 미제출,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 미만인 경우 등

## 선정 및 지급절차



대상자 신청 및 서류제출

신청자 → 경기단체



경기단체장 추천

경기단체 →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



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

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→ 공단



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 확정

공단



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

공단 → 대상자

# 교육지원금

##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


### 지급대상

국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통한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 
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중 어학시험 및 기준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
### 지원기간

대학 과정 : 2~4년, 대학원 과정 : 2년,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: 1년 이내

### 지원범위

입학금 및 등록금, 항공료, 체재비

### 지급중지 및 취소

요구서류 미제출,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 미만인 경우, 체육 이외 분야 유학

### 지급요건

귀국 후 지원기간 이상 체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

### 선정 및 지급절차



### 어학시험 및 기준표

| 구분    | 주관        |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영어  | NEW TEPS  |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| 600점 만점 기준<br>236점 이상          |
|       | TOEIC     | 미국 ETS(Educational Testing Service) | 990점 만점 기준<br>625점 이상          |
|       | TOEFL iBT | 한미교육위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점 만점 기준<br>71점 이상           |
| ② 중국어 | HSK       | 중국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| 신 HSK 5급<br>180점 이상            |
| ③ 일어  | JPT       | 駿台(순다이) 학원(동경고등수험강습회)               | 990점 만점 기준<br>610점 이상          |
|       | JLPT      |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                | N3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|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외국어 시험 및 그밖의 언어     | 공인 외국어 시험<br>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|

입학허가 시 요구하는 성적 이상



## 보험지원금



⋮

보험지원금

# 보험지원금



## 지급대상

국제대회에 참가하거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 
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



국가대표 선수



국가대표 지도자

## 지원내용



상해·질병 보험료, 해외여행자 보험료

## 지급기준



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(1년 단위 가입)

\* 보험가입 및 사업 추진은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수행



## 학생·원로 체육인 지원



장학사업  
- 체육인재 장학지원  
- 체육장학금



원로 체육인 지원

# 장학사업 체육인재 장학지원

## 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초·중·고 재학 학생선수

## 지원내용

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(단, 사용부분 한정)



### 스포츠

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, 스포츠시설 이용  
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



### 학습

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, 학원 및  
학습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등

## 지원방식

바우처 포인트 지급(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정산)

## 사업기간

매년 10개월 이내(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)

## 선정 및 지급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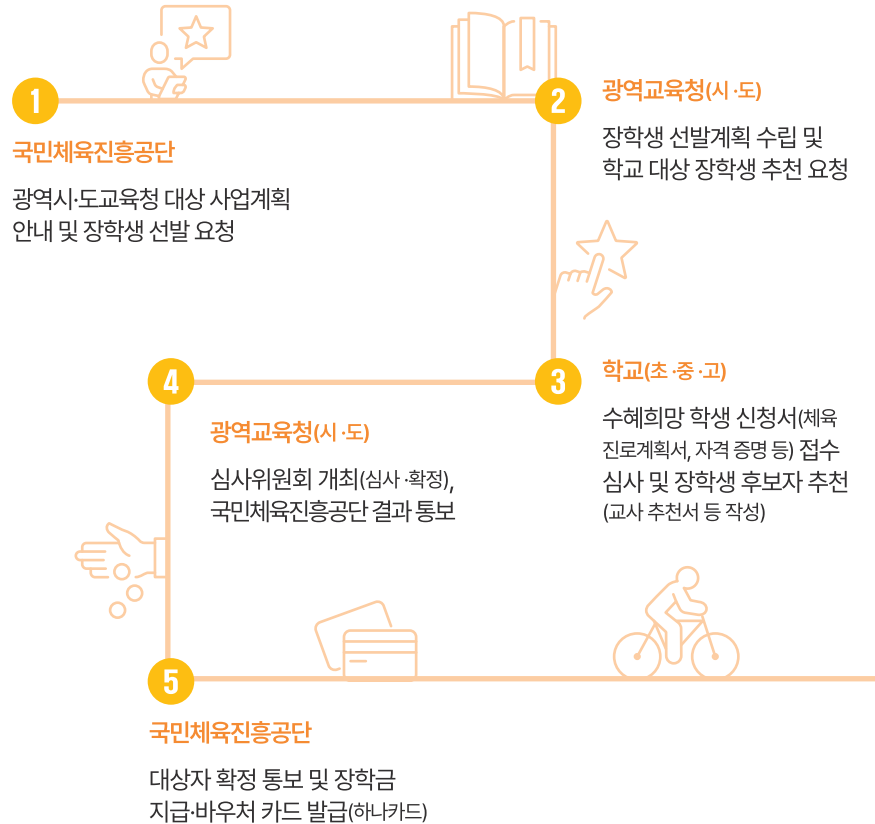
학교추천



광역교육청(시·도)  
심사 및 선발



공단확정



# 장학사업 체육장학금

## 지원대상

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주최 전국 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상위 입상한 학생선수

## 지급기준

재학중인 교육기관별 장학금 차등



### 비장애

초등학생 30만원  
중학생 50만원  
고등학생 100만원



### 장애

고등학생 100만원  
대학생(4년제 미만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) 150만원  
대학생(학사학위과정) 200만원  
\*대학생의 경우,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

## 선정 및 지급절차



대상자 추천 요청

공단 → 대한체육회,  
대한장애인체육회



대한체육회장, 대한  
장애인체육회장 추천

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  
체육회 → 공단



추천내역 검토 및  
대상자 선정

공단



체육장학금 지급

공단 → 대상자

# 원로 체육인 지원

## 지급대상

체육진흥의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

## 지원내용



### 의료비 지원

질병,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 
장기요양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 
3,000만원 이내, 진료 일수가  
180일 이내인 진료금액 지원



### 생계비 지원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 
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 
1,000만원 이내 지원

## 선정 및 지급절차



대상자 신청

신청자 → 공단  
신청자 → 경기단체 → 공단



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

공단



원로 체육인 지원금 지급

공단 → 대상자



#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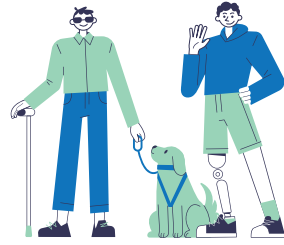


⋮

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



#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



## 지정대상

국가대표선수나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중  
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

- 1 사망한 경우
- 2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경우
- 3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
- 4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심한 장애를 갖게된 경우

## 지정 및 보상절차



## 지원시기

연금, 간호수당  
매월 말일 지급

연중지급

그외  
수급자 신청에 따라 지급

## 지원내용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기준   |  |   |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금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| 유공자  | 유족  | 본인 또는 유족 1명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액(천원)  | 2,245  | 25세 미만 자녀/ 미성년 동생<br>1,400<br>그외<br>1,200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생활 안정수당               | 연금수급자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| 지급액(천원)  |   | 연금수급자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  | 3인 가족 이하   |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4인 가족 이상              |  | 250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층 | 3인 가족 이하   | 150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4인 가족 이상   | 200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간호수당                  | 구분   | 월 지급액(천원)  |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사람  | 2,100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망 위로금                | 구분   | 지급액(천원)  |   | 유족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사망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| 1,504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지원                  | 체육유공자 지정사유가 된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진료비, 보조 기구 구입·수리비용 예산 내 지원   |  |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지원                  | 중학교 이상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 학비와 학습보조비 지원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| 지급액(천원)  |   | 본인, 배우자, 자녀 (30세 미만)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수업료 등  | 본인 납부 입학금·수업료 전액(사립대학은 1/2 금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습보조비(연)              | (중학교) 120, (고등학교) 140, (특수학교) 700, (대학교) 230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취업지원                  | 1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훈련비용(월 40천원)<br>2. 취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 등에 드는 비용 일부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- (유공자) 수강료의 1/2, 연간 500천원 이내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- (배우자·자녀) 수강료의 1/2, 연간 250천원 이내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택 우선공급              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민주택·민영주택의 특별분양 특례<br>- 신청일로부터 입주할 때 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본인 및 유족               |
| 생업지원                  | 국민체육진흥공단,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태권도진흥재단 등 체육 분야 공공기관의 소관 시설 안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 시 우선 반영 |  |   | 본인 및 유족               |
| 그 밖의 지원               | 요양 지원  |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급여·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비용의 80% 이내 지원        |   | 본인, 배우자, 유족 중 부모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고공등의 이용 지원   |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공, 공원, 기념관, 공연장, 수목원 등 이용 시 무료 또는 요금 할인 |   | 본인 및 배우자, 배우자, 선순위 유족 |

##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

###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대상 | 국제대회 입상으로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 |
| 지원기간 | 국제대회 종료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 까지    |
| 연금종류 | 월정금, 일시장려금, 일시금, 특별장려금     |

###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대상 |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한 감독·코치 등 지도자 |
| 지원기준 | 지도 선수의 메달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이면 10점 단위 지급 |

### 생활지원금

|      |  |
|------|--|
| 지원대상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|
| 지원내용 | 1인당 월 50만원(사업기간 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
|      |  |
|------|--|
| 지급대상 |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내용 |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, 학기당 300만원의 범위내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(1인당 1회 지원) |

###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
|      |  |
|------|--|
| 지급대상 |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·연수과정을 통한 체육분야 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|
| 지원내용 | 대학과정, 대학원과정,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의 입학금·등록금, 항공료, 체제비 지원 |

### 보험지원금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급대상 | 국제경기대회 혹은 이를 위한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|
| 지원내용 | 상해·질병 보험료, 해외여행자 보험료                 |

### 체육인재 장학사업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지원대상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초·중·고 재학 학생선수 |
| 지원내용 | 1인당 월 40만원 바우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체육장학금

|      |  |
|------|--|
| 지원대상 | 체육회·경기단체 주관 전국 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학생선수       |
| 지원내용 | 1인당 30 ~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지원, 재학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|

### 원로 체육인 지원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지원대상 | 체육진흥의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내용 | (의료비 지원) 1인당 최고 3,000만원 이내 진료비, (생활비 지원) 1인당 최고 1,000만원 |

###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지원대상 | 국가대표 선수·지도자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기·훈련·지도 중 사망한 자, 심한 장애를 가진 자 등 |
| 지원내용 | 연금(유공자,가족) 및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